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85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이헌승·김소희·송석준

박준태 · 김선교 · 박덕흠

조경태 • 박성훈 • 박성민

윤상현 • 백종헌 • 김상훈

정연욱 • 유용워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등으로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모험자본 공급 촉진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등(안 제9조제30항·제31항, 제229조제6호 및 제229조의2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등을 정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안 제12조제2항제6호)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 제5항 신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법정 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대여(안 제83조제4항제2호 신설)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

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금전대여를 허용할 필요 가 있으므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 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전대여가 가능하도록 함.

마.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안 제444조제9호의 2 신설)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 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0항 및 제3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 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건"을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운용(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제22 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할"을 "해칠"로, "이를"을 "각 호의 행위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

- 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이하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에서 "주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
 - 2.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투자 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방식과 그 외의 투자방식은 각각 동 일방식으로 본다.
 - 3.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증권 수(동일한 기업성 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둘 이상 인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설립한 기업성 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더한 지분증권 수를 말한다)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4. 다음 각 목의 자산에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

가. 국채증권

-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라.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투자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5.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재산 외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29조제2 호에 따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
- 6. 성장가능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않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가격 변동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까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3조제4항 중 "운용함에 있어서"를 "운용할 때"로,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를 "대여해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제83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
- 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전대여의 절차·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제87조제4항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3호"로 한다.

제183조제1항 중 "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단기금융 및 기업성장"으로 한다.

제229조제1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제3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 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등(이하 "주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제5편제3장제1절에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설립일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 · 설립할 것
 - 2.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 · 설립할 것
 - 3.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
 - 4. 모집가액은 5백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설정·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 증권 수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증권 수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운용·공시·해지·해산,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의 산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상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30조제3항 중 "90일"을 "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로 한다.

제444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81조제5항(제7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별표 1 제90호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2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4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29조의2를 위반한 경우 별표 2 제2호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제5항"으로 하고, 같 은 표에 제4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29조의2를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
	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
	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u><신 설></u>	③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
	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
	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	②
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	6
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u>요건</u> 을 갖출 것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6의2·7. (생략)

③ (생략)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 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 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u>해할</u> 우려가 없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u>이를</u> 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②·③ (생 략)
-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 기구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6의2·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u>한</u>
용(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제
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
<u>해칠</u>
<u>각 호의 행위를</u>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
<u>부동산집합투자기</u>
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
<u>업성장집합투자기구</u>
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제
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 대상기업(이하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주투자대상기 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집합 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
- 2.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동일한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하는 행위. 이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지분증권에 투자하는 방식과그 외의 투자방식은 각각 동일방식으로 본다.
- 3.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 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 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증권 수 (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자가 설정・설립한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가 둘 이상인 경 우에는 동일한 기업성장집합

투자업자가 설정·설립한 기 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더한 지 분증권 수를 말한다)를 초과 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자산에 각 기업 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 미만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

<u>가. 국채증권</u>

-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

 권
-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라.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 나하고 투자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5.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재산 외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투

<신 설>

~ ③ (생 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 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 재산 중 금전을 대여(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 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

자하는 행위

- 6. 성장가능성 등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른 평가를 거치지 않은 주투 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 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 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성 장집합투자업자가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같 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
-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니한다.

- --- 운용할 때 -----
- ----- <u>대여해서</u>----

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⑤ (생략)

제87조(의결권 등) ① ~ ③ (생 략)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 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 ⑨ (생 략)
-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 -----. 다만, 다 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 여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
- 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 장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 에서 금전대여의 절차 ·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의결권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 ④ ----- 제81조제1 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 제3호
- ⑤ ~ ⑨ (현행과 같음)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u>증권·부동산·특별자산</u>·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 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 2. · 3. (생략)
 -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u>증권·부동산·특별자산·</u>
혼합자산・단기금융 및 기업성
<u>장</u>
② (현행과 같음)
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
<u>제</u> 2호·제3호
<u> </u>
2. · 3. (현행과 같음)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
투자재사은 우용한 때 제1ㅎ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u>합투자</u>기구

5. (생략)

<신 설>

<신 설>

-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 다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 5. (현행과 같음)
 -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 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 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하 "주투자대상기 업"이라 한다)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 합투자기구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 구)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투자 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 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ㆍ설립일부터 3년 이하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기간까지 제4호의 요건을 <u>갖</u> 추어야 한다.
-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설립할 것
- 2.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할것
- 3.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은 5 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
- 4. 모집가액은 5백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이상일 것
-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설정・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증권 수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증권 수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법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운용・공시

-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 구) ①·② (생 략)
 -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④·⑤ (생 략)
-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9. (생 략) <u><신 설></u>

·해지·해산, 주투자대상기업
에 대한 투자비율의 산정, 집합
투자증권의 발행・상장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
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90일</u>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
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
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
④·⑤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81조제5항(제7호를 제
외한다)을 위반하여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자
10. ~ 29. (생 략)	10. ~ 29. (현행과 같음)